

## [2021년 정부회계 연도별 기출문제 개정사항]

### 1.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의 용어 변경

변경 전 용어	변경 후 용어
관리전환	회계 간의 재산 이관, 물품 소관의 전환
재정운영표의 “일반수익”	재정운영표의 “수익”

### 2.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을 국가회계기준의 개념 및 정의와 동일하게 변경시킨 내용 : 자산의 정의, 자산의 인식기준, 회계정책변경

### 3. 조문의 구체적인 변경내용 [시행 2021. 1. 7.] [행정안전부령 제231호, 2021. 1. 7., 일부개정]

관련 페이지	변경 전 내용	변경 후 내용
	<p>제 9조 [재무제표의 작성원칙]</p> <p>④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. 이 경우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정책상의 변화 등 회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(註釋)으로 공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 9조 [재무제표의 작성원칙]</p> <p>④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. 이 경우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(註釋)으로 공시하여야 한다.</p>
	<p>제11조(자산·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)</p> <p>① 자산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잠재력이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.</p>	<p>제11조(자산·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)</p> <p>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계실체가 소유(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써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원을 말한다.</p>
국가회계기준과 동일하게 개정	<p>참고: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</p> <p>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(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써,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.</p>	

<p>P59 문제4 ④중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부분</p> <p>국가회계기준과 동일하게 개정</p>	<p>제12조(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)</p> <p>① 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계실체에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.</p> <p>참고: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</p> <p>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.</p>	<p>제12조(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)</p> <p>① 자산은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.</p>
	<p>제26조(재정운영표)</p> <p>3. 재정운영결과 : 제2호의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제30조에 따른 일반수익을 뺀 것</p>	<p>제26조(재정운영표)</p> <p>3. 재정운영결과 : 제2호의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제30조에 따른 수익을 뺀 것</p>
<p>P37 문제3 ⑤ P43 문제4 ① P45 문제1 BOX안의 ㉠ P57 문제1 ② P59 문제4 ③중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부분</p>	<p>제27조(수익과 비용의 정의)</p> <p>①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. 다만, 관리전환이나 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. 다만, 관리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는 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27조(수익과 비용의 정의)</p> <p>①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. 다만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(이하 “회계 간의 재산 이관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(이하 “물품 소관의 전환”이라 한다), 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. 다만, 회계 간의 재산 이관, 물품 소관의 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는 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</p>

<p>P17 문제4 ② P29 문제2 ④ P43 문제4 ②</p>	<p>제30조(일반수익의 분류) 일반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	<p>제30조(수익의 구분)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
	<p>제39조(순자산의 증가와 감소) ① 순자산의 증가사항은 전기오류수정이익,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이익 등을 말한다. ② 순자산의 감소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실,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손실 등을 말한다.</p>	<p>제39조(순자산의 증가와 감소) ① 순자산의 증가사항은 회계 간의 재산 이관, 물품 소관의 전환, 양여·기부 등으로 생긴 자산증가를 말한다. ② 순자산의 감소사항은 회계 간의 재산 이관, 물품 소관의 전환, 양여·기부 등으로 생긴 자산감소를 말한다.</p>
	<p>제42조(필수보충정보) ② 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 2.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성질별 재정운영표 2의2.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일반회계의 재정운영표 2의3.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별 회계실체(일반회계는 제외한다)의 재정운영표</p>	<p>제42조(필수보충정보) ② 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 2. 별지 제5호서식의 재정운영표(성질별) 2의2.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운영표(일반회계) 2의3. 별지 제7호서식의 재정운영표</p>
<p>P17 문제4 ① P30 문제4 ① (지방자치단체부분만 개정)</p>	<p>제45조(자산의 평가기준) ① 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환, 기부채납, 관리전환,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.</p>	<p>제45조(자산의 평가기준) ① 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자산의 가액은 해당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. 1. 교환, 기부채납,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: 공정가액 2.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: 직전(直前) 회계실체의 장부가액</p>

<p>P10 문제5 ②  P37 문제3 ②  P43 문제4 ④  P59 문제4 ⑤ 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부분</p>	<p>제60조(회계변경과 오류수정)</p> <p>1.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한다. 다만,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.</p>	<p>제60조(회계변경과 오류수정)</p> <p>1.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비교표시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초순자산 및 그 밖의 대응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한다. 다만,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.</p>
<p>국가회계기준과 동일하게 개정</p>	<p>참고: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</p> <p>1.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비교표시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순자산 기초금액 및 기타 대응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한다. 다만,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.</p>	

■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21. 1. 7.>

## 순자산변동표

해당연도 20××년×월×일부터 20××년×월×일까지  
 직전연도 20××년×월×일부터 20××년×월×일까지

지방자치단체명

(단위 : 원)

과 목	해당연도(20××년)						직전연도(20××년)					
	일반 회계	기타 특별회계	기금 회계	지방 공기업 특별회계	내부 거래	계	일반 회계	기타 특별회계	기금 회계	지방 공기업 특별회계	내부 거래	계
<b>I. 기초순자산</b>												
보고금액												
전기오류수정손익												
회계변경 누적효과												
<b>II. 재정운영결과</b>												
<b>III. 순자산의 증가</b>												
회계 간의 재산 이관 및 물품 소관의 전환에 따른 자산증가												
양여·기부로 생긴 자산증가												
기타 순자산의 증가												
<b>IV. 순자산의 감소</b>												
회계 간의 재산 이관 및 물품 소관의 전환에 따른 자산감소												
양여·기부로 생긴 자산감소												
기타 순자산의 감소												
<b>V. 기말순자산</b>												
(I - II + III - IV)												